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맹성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12

발의연월일: 2025. 2. 25.

발 의 자: 맹성규·이병진·이연희

염태영 • 박균택 • 복기왕

박해철 • 황명선 • 박홍배

서삼석 • 박지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·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,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.

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,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34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4조제5항 중 "관계"를 "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, 관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34조(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제34조(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에 대한 안전점검 등) ① ~ 에 대한 안전점검 등) ① ~ ④ (생 략) ④ (현행과 같음)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에 대하여, 시·도지사는 관할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 하여, 관계----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 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를 할 수 있다.